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이승미 의원

안녕하십니까? 이승미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·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장이 사업자에게 시내버스 차량 내 위생, 방역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고, 버스승객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사업자가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송을 거부하거나, 승차 승객을 하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